

# 줄자

## 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8597 (2026.02.19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중국
- 최종 원산지: 중국





- ㉞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블레이드의 숫자·눈금 표시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단순한 공정이며, 블레이드는 캄보디아 반입 당시 이미 지정된 치수로 절단되고 도색된 상태로 캄보디아에서의 공정을 통해 명칭, 특성 및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

→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

#### IV 시사점

- ㉞ 본 사례에서는 실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캄보디아에서의 공정보다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압도적으로 판단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으나, 일부 유사한 측정용 도구에 대해서는 공정의 차이에 따라 원산지를 달리 판정하기도 함

#### 측정 도구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줄자
사례번호	NY N303157 (2019.02.22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산 강재에 어닐링, 슬리팅, 도장 및 눈금 인쇄 공정 수행</li> </ul> </li> <li>• 중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플라스틱 케이스, 보빈, 흑, 벨트 클립 제작</li> <li>- 중국산 부품과 한국산 부품 최종 조립</li> </ul> </li> </ul>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BP는 중국에서 추가된 부품들이 눈금이 인쇄된 줄자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의 조립공정으로 명칭, 특성 및 용도가 변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</li> <li>•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어닐링, 슬리팅, 도장 및 눈금 인쇄공정을 수행한 한국으로 판정</li> </ul>
물품명	스피드 스퀘어
사례번호	NY N347948 (2025.05.05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베트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알루미늄 판재를 삼각형 모양의 스피드 스퀘어 최종 크기로 스탬핑</li> <li>- 스크라이브 홀과 같은 세 개의 구멍을 최종 크기와 형태로 펀칭</li> </ul> </li> <li>• 중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베트남산 블랭크에 숫자 스탬핑, 가장자리 밀링, 검은색 표면 처리 수행</li> </ul> </li> </ul>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알루미늄 판재를 단순히 최종 형상으로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그 용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, 숫자가 스탬핑 되어야 비로소 측정 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 해당 공정이 수행된 중국이 원산지임</li> </ul>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